

『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·인근 주민 간 발생 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의 신속·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- 다.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라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마.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- 바.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, 제12조, 제36조, 제37조
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16조, 제17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.소매업자 사이의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이나, 인근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.